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관련 처분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 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12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 제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	대표자	과태료 부과 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일송이앤씨	416-81-54786	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, 9층 72호 (풍산동)	임재순	2,000,000원	'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(건축,토목,조경,기계) 중 철근콘크리트공사'에서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2025. 11월분 195,000원 미납

4. 공고기간: 2026. 6. 12. ~ 2026. 6. 27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근로감독관 김정하(Tel. 031-850-776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